

#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실무 해설

정 문 호 전문위원

jmh@klca.or.kr / 2087-7158

## I 서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2012년 4월 15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부칙에 적용특례를 두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의 회사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100개사가량은 금년 말까지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실무를 준비해야 하는 상장회사 담당자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규내용과 도입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II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요

개정상법에서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보통 '준법지원인제도'라 속칭, 이하에서는 '준법통제제도'

라 함)를 도입하였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 (1) 적용대상

상법에 의해 준법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이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다만, 자산규모 5천억원 1조원 미만의 회사는 2013년 말까지 구축의무를 유예하고 있다(상법시행령 부칙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39조 단서).

### (2) 준법통제기준

적용대상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토록 하고 상법시행령은 준법통제기준의 구체적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40조).

즉 1.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 임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9.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준법지원인**

① 의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② 임면, 직무, 임기 및 근무형태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직무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의 근무형태는 상근으로 한다.

③ 자격

준법지원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 법상의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으로 하고(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상법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

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41조).

④ 의무

준법지원인은 i)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ii)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13 제7항), iii)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13 제8항).

⑤ 기타 독립성 보장 등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3 제9항, 제10항). 또한 준법지원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시행령 제42조).

**III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실무**

**(1) 사전 고려사항**

새로이 도입되는 준법통제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큰 틀 속에서 이해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 COSO 보고서(1992년)는 내부통제를 '재무보고의 신뢰성,

사업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법령 준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행위, 정보 및 의사소통, 감시 등의 내부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관리시스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통제제도 등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또한 감사제도와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역할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복되지 않게 적절히 배분하여 각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준법통제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준법통제제도는 각 회사마다 규모와 업종, 영업의 성격에 따른 법률리스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 법적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준비사항

준법통제제도의 구축은 법적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준법통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지원 부서 설치, 전사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이므로 적어도 이 두가지는 법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결정기관(구축 주체)

회사의 어느 기관이 준법통제제도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과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을 보아 이사회가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

는 준법통제제도를 구축·정비·운영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고 할 것이다.

\* 준법통제제도의 구축·운영의 전반적이고 최종적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하며, 이사회가 준법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 감독 등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국내의 판례, 학설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는 기본 방침만을 결정하고 실제적인 세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대표이사나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

## (4) 준법통제기준의 마련시 고려사항

대상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가 행한다(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상법시행령에서는 나열하고 있는 9개 항목이 포함된 준법통제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많은 회사로펌에 의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회사들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총칙, 준법통제환경, 준법통제활동, 유효성평가, 기타 등 5개 장 및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대상 회사들이 각각 개별적 기준을 제정할 경우 제정비용 등 상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실례를 보면 준법통제기준 및 시스템(사내교육프로그램, 결재과정에서 준법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준법지원인이 정보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6개월 내 자체 구축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지만 로펌 등에 의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일부 회사도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준법지원인의 선임시 고려사항**

① 준법지원인의 자격 검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명하는데 제도 입안시 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준법지원인의 자격제한 문제였다.

결국은 상장회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이외에 법률학조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상장회사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자를 추가했는데 실무적으로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준법지원인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장회사를 살펴보면 기존 사내변호사, 상장회사 법무부서에 근무했던 자, 법률학석사이상 상장회사 법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자 순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신규채용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자, 상장회사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이었던 자는 아직은 극히 적음을 준법지원인 후보자 선정시 실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준법지원인의 겸직 검토

준법지원인의 겸직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은 원칙적으로 회사 고유의 영업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준법통제업무만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준법지원인이 준법통제업무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인력관리상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지원과 연관된 다른 업무를 일

부 겸할 수 있다고 한다(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 기준 해설).

또한 준법지원인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 겸직이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적정하게 하도록 준법지원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사 겸직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점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사겸직시 준법지원인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다른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준법지원인이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는 없다고 한다(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 기준 해설).

실제로도 도입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준법통제업무만 담당하는 경우는 적고 대다수 준법통제업무 및 그 외 법률관련(송무, 법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③ 준법지원인의 회사내 대우

준법지원인의 회사내 대우는 보통 부서장(팀장)급 이하이며 임원급인 경우도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실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④ 준법지원부서의 설치 검토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을 위한 준법지원부서의 설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사례를 보면 준법지원부서를 설치한 회사가 다소 많고, 지원부서를 독립부서로 편성한 회사가 다른 부서의 일부로 편성된 회사보다 많으며,

보통 그 명칭으로 법무실(팀), Compliance팀, 준법지원실(팀), 기획부서(기획실, 기획조정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실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⑤ 준법지원인 업무의 중복 여부 검토

준법지원인 업무와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이후 사내 법무부서 및 사내 감사부서, 내부회계통제부서와 업무중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법무지원 과장상 중복 업무가 있는 경우 준법지원인이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주로 기존의 내부통제시스템(법무팀, 감사실, 회계지원실 등)과 준법지원인이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6) 기타 도입 실무상 유의사항

① 도입의무 불이행시 문제

준법통제제도 적용대상 상장회사가 동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직원의 법령위반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사들은 법상 강제된 준법통제제도 도입·운영의무의 해태(임무해태)로 인해 해임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추궁당할 수도 있다. 결국, 준법통제제도의 운영은 이사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이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② 준법통제제도 채택시 혜택

2011년 상법은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법

634조의3을 개정, 적용대상 상장회사가 아니라도 준법통제제도를 성실하게 도입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대표이사 등이 주요주주 등에게 상법 542조의9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회사의 벌금형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는 준법통제제도의 자발적 도입 및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동기 유발 법제, 예컨대 유효하고 적절한 준법통제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양형기준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법무부에서는 준법통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 도입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를 통하여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준법관리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위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감경, 공표명령하향조정, 직권조사면제 등의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③ 향후 과제

새로이 도입되는 준법통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통제제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